

이 보도자료는 2024. 12. 23.(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
전화 032-860-4340

보도자료
2024. 12. 23.(월)

마약 배달을 위해 입국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원 3명 검거 - 눈 덮인 산에서 마약 캐고, 숙박 시설로 마약 배송받고, 동분서주 국제 마약사범들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① 공유 숙박 플랫폼 단기 임차 숙소로 배송된 밀수입 필로폰 약 1kg을 수령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사범, ② 야산에 파묻힌 필로폰 약 600g을 수거한 대만 국적 마약 사범, ③ 국제 마약 밀수 조직원을 가장한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건네받으려고 시도한 일본 국적 마약 사범을 검거하여 각각 구속 기소하였음

피고인들이 국내 운반하려고 시도한 필로폰 약 2.6k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8만 6천명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기준 약 7억 8천만 원 상당임

- 피고인들은 오로지 마약 운반책(일명 '드라퍼')으로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수사한 결과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대한민국의 직접 조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류 밀수·유통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들을 위하여 생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였고, 외국 소재 상선으로부터 입국 및 국내 체류 비용 일체를 지원받았음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경·해군·국정원)는 앞으로도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

단기 임차 숙소로 국제 배송된 필로폰 수령책 사건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말레이시아 국적 33세 남성, 국내 마약 전과 없음
- 대만 국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4. 8. 27.경 피고인이 머물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 제품으로 위장한 필로폰 약 995.14g이 은닉된 말레이시아 發 국제우편물을 수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2. 주요 수사 경과

- '24. 8. 20. 인천공항세관, 말레이시아 發 필로폰 적발
- '24. 8. 27. 인천지검, 우편물 수취지에서 A 긴급체포
- '24. 8. 30. A 구속
- '24. 9. 12. 인천지검, A 구속 기소

※ '24. 11. 21. 인천지법에서 1심 징역 7년 선고

2

야산 은닉 필로폰 수거책 사건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B, 대만 국적 36세 여성, 국내 마약 전과 없음
- 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4. 11. 28.경 안산 상록구 소재 야산 등산로에서 필로폰 약 598.3g을 수거하고, 가방 안에 소분된 필로폰 약 0.6g 소지[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 주요 수사 경과

- '24. 11. 27. 인천지검, B 관련 범죄정보 입수
- '24. 11. 28. 인천지검, 안산 소재 야산에 잠복 수사하여 B 긴급체포

- '24. 11. 30. B 구속
- '24. 12. 16. 인천지검, B 구속 기소

3 국제 마약 밀수 조직원 위장거래 사건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C, 일본 국적 53세 남성, 국내 마약 전과 없음
- 국적 불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4. 12. 4.경 필로폰 약 1kg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침[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2. 주요 수사 경과

- '24. 12. 3. 인천지검, C 관련 범죄정보* 입수
 - * 국적 불상 외국인이 국내에 이미 밀반입된 kg 단위 필로폰을 거래하려 한다는 취지
 - CCTV 분석한 결과 C가 거래 현장을 답사한 사실 확인
- '24. 12. 4. 인천지검, 필로폰 1kg 위장거래 현장에서 C 긴급체포
- '24. 12. 6. C 구속
- '24. 12. 23. 인천지검, C 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1.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직접 국내 마약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

- 기존에는 국내 조직이 해외 발송책에게 마약류를 주문한 다음 이를 수령하여 유통해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대한민국에 침투시켜 마약류 국내 유통에 개입하고 있음
-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나 국내에서 장기 체류한 외국인에 비하여 신원 특정 및 동선 추적이 어려운 실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피고인들은 오로지 마약 배달을 위하여 치밀한 준비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

- 피고인들은 입국 직후 범행을 개시하였음
 -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생애 처음으로 입국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에어비앤비 숙소 등을 전전하였음
 - 피고인들은 외국 상선으로부터 입국 비용, 국내 체류 및 이동 비용 등을 사전 지급받고, 고액의 범행 대가를 약속받았음
-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을 위하여 1회용 지퍼백 수백 개, 100g 중량 무게추 등 마약류 소분 도구와 추적·감시를 피하기 위한 가발, 선글라스(피고인 B), 상선·공범 연락용 휴대전화 4대(피고인 C)를 준비하여 입국하였음
- 피고인 A는 특별한 수입 없이 대한민국에 약 2개월 체류하면서 마약은닉 국제우편물 수령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개월 정도 대한민국에 단기 체류하면서 마약 소분·운반책(일명 '드라퍼')으로 활동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C는 본건 필로폰 약 1kg을 거래하여 국내 체류 공범에게 전달한 직후 출국할 예정이었음

5 향후 계획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는 앞으로도 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본건 관련 국내 마약 유통·판매책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수법의 마약밀수까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겠음
- 특히,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세관,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유통 및 밀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예정임
- 향후에도 인천지검은 대한민국의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음 ☑

[별첨1]

- 관련 영상, 사진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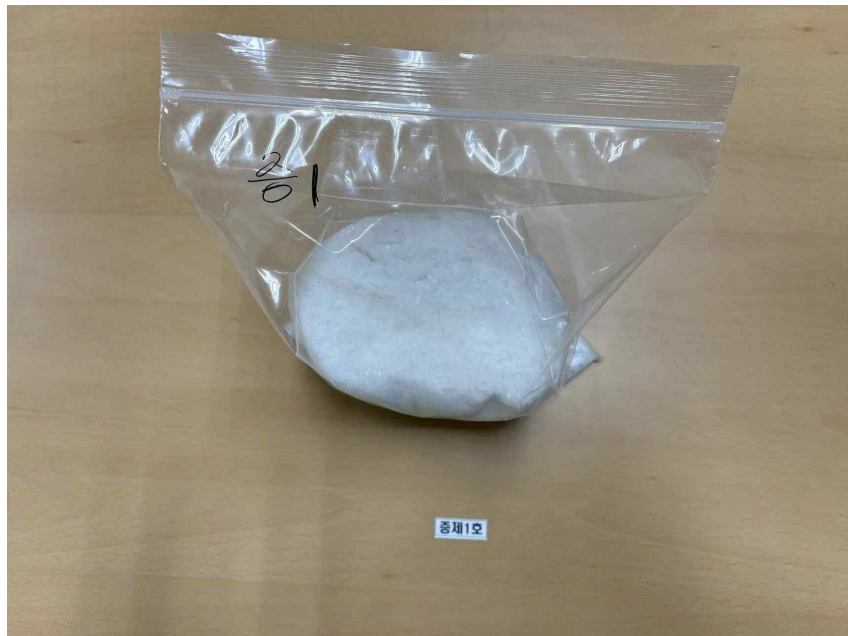
별도 재생 프로그램 구동하지 않아도 더블클릭 시 재생됨

<'24. 11. 28. 인천지검 마약수사관 촬영 영상>

- 피고인 B가 등산로 중간에서 상선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필로폰이 파묻힌 장소를 찾기 위해 서성이는 장면

<'24. 11. 28. 인천지검 마약수사관 촬영 영상>

- 등산로 입구에 잠복 중이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이 필로폰을 수거하고 내려온 피고인 B에게 다가가 검거하는 장면



<피고인 B가 야산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600g 사진>



**<피고인 B가 필로폰을 소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입국한 1회용 지퍼백>**



<피고인 B가 소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4. 11. 26. 방범용 CCTV 영상>

- 피고인 B가 소분한 필로폰을 은닉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며 건조물에 들어가는 모습

<'24. 11. 26. 방범용 CCTV 영상>

- 피고인 B가 소분한 필로폰을 은닉하고 건조물에서 나와 다른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모습

<'24. 12. 3. 방범용 CCTV 영상>

- 피고인 C가 입국 직후 캐리어를 끌고 필로폰 거래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을 살피보는 모습
- 피고인 C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kg을 매수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음 ☑